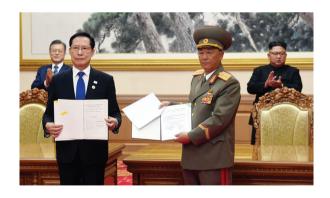
평화누리통일누리 별책부록

##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18, 11, 1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연구소 www.peaceone.org

##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 시작하며

9·19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 가 남측 정부에 의해 비준(10. 23)되고 남북 장성급 회담(10. 26)에서 이를 통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실로 70년에 걸친 남북 간 군사적 적대와 분쟁관계를 뒤로 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10. 29)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바른 미래당도 이를 청와대의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등 '군사 합의서'의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조·중·동 등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들은 '군사 합의서' 채택으로 남측 안보가 마치 결딴이라도 날 듯 호들

갑을 떨며 대중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군사 합의서'의 비준을 문제 삼는 일부 야당의 행각은 바로 '군사 합의서' 이행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들의 기도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사 합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 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라고 할 수 있다. '군사 합의서'는 당장 남 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전 역에서 남북 군대의 전쟁연습과 전방 배치를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나아가 재래식 군축까지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군 사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은 앞으로도 적대와 분단을 극복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군사 대 결적 관점에서 북을 잠재적 침략자로 낙인찍고 군사적으로 궤멸시켜 승리를 달성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걸림돌이 될 '군사 합 의서'의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군사 합의서'의 이행과 후속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가 정착될 경우 적대와 분단. 군비증강 속에서 쌓아 올린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 것을 우려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까지 무력 화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들의 '군사 합의서'에 대한 심각 한 왜곡 선동을 바로 잡음으로써 '군사 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전망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쓰였다.

### 1.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의미

#### 1)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냉전이 해체되자 '파리헌장'(1990. 11)을 통해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한 유럽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 및 핵군축을 단행했다. 군사적 신뢰구축(CSBM) 은 '스톡홀름 협약'(1986)→'비엔나 협약'(1990, 92, 94, 99), 재래식 군축은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1990, CFE Ia, 1992), 핵군축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I 1990, Ⅱ 1993) 등으로 결실을 보았다.

## 유럽에서는

- 군사적 신뢰구축(CSBM) : 비엔나 협약 등
- 군축: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등
- 핵군축 :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II)

유럽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 협약을 주도 해 온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1994)는 '군사적 신 뢰구축조치'를 "군사적 긴장과 기습공격의 두 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 군사자료 교환, 일정 수준의 전력을 넘어서는 군사 이동의 사전통고와 군사연습의 제한, 특정 지역에 부대와 특정 형태의 무기 배치 제한, 검증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OSCE, 「Non military CBM guide」, 2012).

CFE 조약은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유럽 지역의 재래식 무

기를 감축해 NATO(북대서양조약 기구)와 WTO(바르샤바조약 기구)가 보유한 5대 공세무기—탱크,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를 각각 2만 대, 3만 대, 2만 문, 6,800기, 2,000기 이하로 줄이기로 한 다자간 합의다. CFE 조약은 재래식 군축의 목적을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래식 무기의 안전하고 안정된 균형을 구축하고 안정과 안보에 해로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습공격의 감행과 대규모 공격작전을 개시할 능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의거해 유럽 국가들은 2005년까지 전체 보유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5만여 대(SIPRI, 2006)의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였다.

CFE Ia는 유럽 국가들의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합의다. 독일은 이합의로 통일 전 66만 명에서 CFE Ia에서 345,000 명의 보유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약 18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한편 미국, 캐나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영공개방조약'(1992)을 체결하였다(2002 발효). '영공개방조약'은 그 목적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협력안보를 더욱 발전, 강화시키며", "(군사적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현존, 미래 군비통제(군사적 신뢰구축) 협정의 준수를 감시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군사적 대결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안보 중진을 위해 '비엔나 협약'과 CFE 조약과 같은 협정들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START I, II는 미·소(러시아)가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감축—START I은 미국 6,500기, 소련 6,000기, START II는 미국 3,500기, 러시아 3,000기—하기로 한 조약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러시아와 'NEW START'를 체결해 핵무기를 1,550

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핵무기 현대화에 나섬으로 써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지향에 역행했으며, 미·러는 여전히 냉 전적 핵억제론에 매달리고 있다.

#### 2)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한반도에서도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냉전해체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하였으며, 북미도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신뢰구축, 재래식 군축, 핵군축을 단행해 나갈예정이다.

### 군사분야 합의서 요지

-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실질적 군 사적 대책 강구 (비무장지대 GP 완전 철수 추진 등)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 전한 어로 활동 보장(공동 어로 구역 설정)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의 효시는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들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사문화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장성급 회담 (6.14)에서 되살아났으며, 이번 '군사 합의서' 3조 ①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 합의서'로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1. 상호 적대행위 중지,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4.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5.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6. 발효로 구성되어 있다.

1.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작전수행절차 수립, 2.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3.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은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4.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등으로 구체화된다

'군사 합의서'는 '비엔나 협약' 등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비교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군사적 사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등 비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고 있어서 그폭이 넓으며, 비록 군사분계선 일대로 국한되지만 군사연습의 전면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보다 철저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방 배치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 등의 조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래식 군축은 아직 일정에 오르지 않고 있으나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 합의서'에서 한결같이 군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신뢰구축의 성과에 따라 군축 논의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국전쟁 이후 줄곧 남북 각각 10만, 총 2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현재 통일 독일의 병력이 18만 명,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 병력이 22만 명, 일본의 병력이 2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통일 후 20~30만 명으로의 감축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겠다.

한반도에서의 핵군축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성명이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측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곧 대북 핵위협 제거를 함의한다. 남·북·미 합의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북은 지난 수년간의 핵억제론에서 벗어나 사상 최초로 핵무기 폐기로 평화체제를 수립한 초유의 선례를 세우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비핵화에도 큰 상징적 추동력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 2. '군사 합의서'에 대한 왜곡과 거짓선동의 진실은?

'군사 합의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수구인사의 비판은 다음 몇 가지 로 압축된다. 그들이 제기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보자.

#### 1) '군사 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한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군사 합의서'가 전방지역에 대한 정찰·감시 를 불가능하게 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영공개방조약'(Treaty on Open Sky, 1992)을 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영공개 방조약'을 통해 정찰·감시를 늘렸다는 것이다.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유럽 전역에서 군사연습의 규모와 횟수 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 이동의 사전통고,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영공개방조약'은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 비엔나 조약이나 CFE 조 약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의 이행 준수 여부, 나아 가 환경문제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대국의 군사 활동과 시설에 대한 관측(Observation) 비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대북 정찰(Reconnaissance) 비행은 국지전과 전면전 같은 군사작전 을 위한 군사 활동으로 '영공개방조약'에 따른 관측 비행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영공개방조약'에 따라 상대국 지·해상을 관측하기 위한 비행기(관측기)에 장착하는 장비(센서)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하는 비행기(정찰기)에 장착하는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상업용을 사용—민감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정밀 정찰을 막고 국가별 관측 수준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하며, 상대국은 관측에 앞서 관측 비행기에 장착된 센서를 확인할 수 있고 관측 시에는 관측 비행기에 동승해 관측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관측 비행을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사전통고 해야 하며, 관측 횟수도 영토의 크기에 따라 연간 최대 42회(미국 러시아/벨라루스)에서 최소 2회(포르투갈, 체코)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미 당국의 대북 정찰·감시는 북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고 고해상도의 센서를 사용하여 북의 군사 활동과 시설을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정밀 감시함으로써 대결과 긴장, 종국에는 위기와 분쟁을 불러오는 군사 활동이다. 북에 의한 미국의 EC-121 정찰기 격추사건(1969.4)은 그 좋은 예다. 따라서 남북의 정찰활동을 제한해 남북간 위기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군사 합의서'는 위기와 분쟁을 줄여 군사적 신뢰를 쌓고자 한 '영공개방조약'의 채택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오히려 대북 군사적 정찰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고착, 확대하고 위기와 분쟁을 조장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주장이다.

앞으로 남북 전 지역에서 군사연습의 규모와 횟수가 제한되고 공세 부대의 후방 배치가 이루어지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 되고 군축 등이 시행될 경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남



고정익 ( 동부40km·서부20km ) 및 회전익( 10km ) 항공기, 무인기( 동부15km·서부10km ), 기구( 25km )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북 지·해상에 대한 남북 상호 관측 비행—정찰 비행이 아닌—이 실시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다지는 데에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군사 합의서'에 따른 합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 비행은 시기상조이며 별 의미가 없다. 남북은 아직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대방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비무장지대 내 북 감시초소(160곳)와 남 감시초소(60곳)를 산술적 동수(11곳)로 철수함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북의 감시초소만 남고 DMZ 안에서 북한군 침투를 감시할 감시초소가 부족하게 되어 20만 명이나 되는 북한군 경보병여단 등의 특수부대에 대처하기 어렵다(김민석 국방부 전 대변인)?

비무장지대의 남북 감시초소(GP)를 동수로 폐쇄할 경우 북 감시초소만 남게 되어 남측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 합의서'는 2조 ①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측의 감시초소만 철수되고 북측의 감시초소는 남게 된다는 문제 제기는 '군사 합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제기할수 없는 문제다. 또한 '군사 합의서'는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전부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철수 방식과 관련해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 내 감시초소들을 철수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남북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기관총, 박격포 등—의 사거리와도연관된 조치로 보인다.

이와 달리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 지상군의 공격 회랑(남북축선)에 위치한 감시초소는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부터 동서로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는 방법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특정 지역 내 남북의 감시초소가 모두 철수되는 만큼 철수되는 감시초소의 수와 관계없이 남북 어느 한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

하지 않다. 남북으로든, 동서로든 등거리, 등면적에 따라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결국 모든 감시초소가 철수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우 발적인 충돌을 막고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이 중무장한 전투병력을 비무장지대에 그것도 12.000명 (남측만 GP 상주 병력과 수색대대 매복조 등 4.000명 이상으로 추정) 이 상의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은 1조 10항에서 민정경찰의 역할을 위해 1.000명 이하의 경무장 병력만 배 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대북 감시와 방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 흐름을 쫓지 못하는 낡은 사고다. DMZ 경계· 감시는 CCTV 설치 등 이미 과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감 시초소를 이용해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른 바 선(線)방어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북이 전면 공세에 나 서면 절대적인 전력 열세로 방어가 불가능해 인명 손실이 클 것이며 남북 회랑을 이용한 북 공세에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한 반도 유사시 감시초소 병력으로 20만(?) 경보병여단 등 북 특수부대 의 공격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 니라 전략·전술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 3) NLL을 무시(포기)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북에 유리하게 설정했다?

'군사 합의서'에 대한 비판은 서해 완충수역 문제로 시작해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해 완충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북쪽 초도까지는 50km, 남쪽 덕적도까지는 85km로 남쪽에 훨씬 불리하게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부가 NLL을 무시한 것이고, 결국 NLL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정 지역에 완충지역을 두는 의미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유 발하는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에 해상분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법적 근거가 없는 NLL을 긋고 남측 이 이를 해상분계선인 양, 그 이남을 영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있 다. 이에 반해 북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상경비선을 그어 운영해 오고 있다는 데 또 다른 긴장과 충돌 요인이 있다. 더욱 이 이 수역은 국제해양법상 북의 영해(12해리)로 되며, 따라서 서해 5도 는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면 북의 영해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데 다른 충돌 요인이 있다. 나아가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해상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곳 지형은 상호 군사적 위협으로 되며, 남측 해군력의 압도적 우위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서해 해상의 긴 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위협 요소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인 셈이다.

#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대한민국 국방부 Maritime Measures to Cease Hostile Acts (해안포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동해 East Sea 서해 West Sea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하여 적용, 완충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리가 바로 NLL 문제를 남북이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NLL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군사 합의서'가 반쪽이 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우며, 서해 해상경계선을 새로 그어야 하 는 평화협정 체결도 어렵게 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 (1) NLL을 기준으로 서해 완충수역의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 당한가?

NLL 문제의 해법은 NLL을 지우면 된다. NLL은 아무런 국제법

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은 물론 NLL을 그은 미국과 심지어는 과거 남 일부 정권까지도이를 분계선 또는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 미 해상 전력의 북쪽으로의 진군을 제한하기 위해—남 한군의 무력북진통일 기도

## 북방한계선(NLL)

-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1975. 2. 28) "NLL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법에 반하는 것"
- 이양호 전 국방장관(1996, 7, 18) "NLL은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측 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이 위반이 아니다."

를 막기 위해서—임의로 그은(1953. 8. 30) NLL에 대해 북이 이른바 서해 사태(1973. 10)를 통해 국제 분쟁화했을 때 박정희 정권은 내부 비공개 검토에서 법적으로는 북 선박의 NLL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서해 5도 사태 직후 프랜시스 언더힐 주한 미국대사는 워싱턴에 보낸 외교전문(1973. 12. 18)에서 "NLL에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보낸 전문(1975. 2. 28)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더욱이 국제해양법발효(1994. 11)로 12해리 영해가 법제화되자 NLL 수역과 서해 5도는 북의 영해에 속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의 NLL 수역에서의 군사연습이대북 침략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NLL은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1차 서해교전(1999. 6)이 발생하자 미국 국무부는 NLL 수역을 '분쟁해역', '공해 수역'으로 불렀다. 남의 영해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해교전 이래로 남의 보수수구세력은 NLL을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과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쟁거리로 삼았으며, 특히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NLL을 포기했다고 거짓 선거운동을 하면서 NLL 정쟁화의 극단을 달렸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이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NLL과 그 이남의 영해화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북과 긴장 완화의 길을 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과 적대를 일삼은 박정희, 김영삼 정권하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NLL 문제 인식에서 퇴보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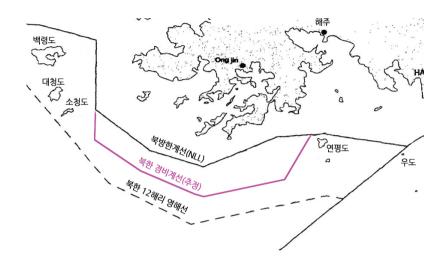
NLL에 대한 이상의 진실을 통해 본다면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NLL 수역에 대한 남측의 부당한 영해 주장에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서해 5도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을 영해로 간주하는 남측의 잘못된 주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을 기준 삼아 서해 완충수역이 북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2) 서해 완충수역을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어떤 문제가?

서해 완충수역을 설정하는 데 북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보도(조선일보, 9, 25)도 있다.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 로 하면 북쪽 초도까지가 60km, 남쪽 덕적도까지가 75km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실이라면 이는 타당한가? 서해 완충수역을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가른다면 해상경비계선 이북의 완충수역과 이남의 완충수역이 등면적에 가깝다. 이에 서해 완충수역을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서해 완충수역을 설 정했다면 NLL 이남을 영해로 보는 수구세력들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측 당국이 해상경비계선을 어떻게 대 해 왔는지를 알면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연평도 지역은 그쪽에 북한이 나름대 로 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격 그 것은 굉장히 이제 서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로서는 필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국회 국방위 속기록, 2010, 11, 24)라고 답 변했다. 김장관의 말뜻은 남북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북의 해상경비계선 이북으로 남의 훈련 포탄이 떨어져 북을 자극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남측 당국이 북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이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사실상 묵인 해 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연평도 포격전은 당시 해상경비계선 이 북으로 남측 훈련 포탄이 떨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안규백 의원 국회 국방 위회의록, 2010, 11, 24), 이에 북은 당일 오전 청와대(이명박 정권)에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고, 묵살 당하자 연평도를 보복 포격함으로써 발생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상경계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 선은 현실적으로 남의 영토인 서해 5도와 북의 영 해기선 중간 지점을 잇는 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단. 소청도와 연평 도 사이 수역은 북의 영해기선에서 12해리가 넘으므로 이 수역은 북 의 12해리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남은 NLL을, 북은 영해 선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은 2007년에 남북이 서해 해상분(경)계선의 설정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을 때 북이 제시 했던 해상(분)경계선과 크게 일치한다. 그렇다면 서해 5도 중간선-남 측 당국이 현실적으로 용인해 온 북의 해상경비계선-을 해상분계선 으로 삼아 당장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우발충돌을 막고 NLL과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전향적인 조치로 될 것이다. 이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 한 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민족과 남북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으로 받아들이고 돌파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 (3) 남북 해군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완충수역은 남에게 불리한 설정일까?

군사적 측면에서 해상 완충수역 설정과 동 수역에서의 군사연습 중단은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호 군사적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력과 해상의 지형 등을 들 수 있다. 서해 해상에서 상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남북 전력은 해상에서는 경비정에서 구축함까지, 지상에서는 해안포와 야포, 공중에서는 전투기 등을 들 수 있다.

남측 함정에 대한 북측 위협은 해상 전력이 사거리 100km(KN-01 개량형), 지상 전력(실크 웜 지대함 미사일)이 사거리 100km, 공중 전력이 사거리 70km+ $\alpha$ (KN-01 개량형) 정도다. 북측 함정에 대한 남측 위협은 해상 전력이 사거리 약 180km(해성함대함미사일), 공군 전력이 약 200km(하푼블록॥ 공대함미사일) 정도다.

남북이 갖는 이상의 위협 요인으로 볼 때 남북으로 최대 135km의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은 남측에 유리하다. 남의 해군과 공군은 서해 완충수역 이남에서도 완충수역 이북에 위치한 북의 함정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 반면 북의 함정은 완충수역 이북에서 완충수역 이남의 남측 함정들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없다. 물론 남북 함정들은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펴는 상대방 함정을 공격할 수 있으나 이때도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사거리와 화력 등으로 볼 때 북측 함정들이 공격에 노출되기 더 쉽고 피해도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북측 함정은 2척의 구

축함(1500~1800톤급) 등을 제외하면 남측 완충수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남측 함정을 모두 사정권 안에 둘 수 없다. 북의 지상, 공중전력도 사거리가 짧아 완충수역의 남측 함정을 공격하는 데서 제약이 따른다. NLL 수역에서 남북 함정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측 함정이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은 남측 해상전력의 일방적인 우세를 말해 준다.

이렇듯 서해 완충수역 설정은 NLL, 북의 해상경비계선, 전력 등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남에 불리하게, 북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이 NLL의 덫에서 벗어나 서해 해상의 중첩된 문제를 풀고 서해 해상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갈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서북 5도를 고립시키고 도서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 및 유휴화시켰으며, NLL의 무력화로 인민군이 인천 앞바다에 드나들 수 있는 등 해상 전력 운용에서 남측 해군에게는 소극적·수세적 환경을, 북측 해군에게는 적극적·공세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차동길 단국대 교수, 예비역 해병 준장)?

지형적인 측면에서 서해 5도가 방어에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은 정전 협정 2조 13항 ㄴ목에서 서해 5도를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기로 확정했을 때부터 이미 잉태된 것이다. 북이 서해 5도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때처럼, 황해도 일대 육지에서 얼마

든지 공세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북이 해군력을 복구한 1970년 대부터는 해군력을 이용한 타격도 가능했다. 그러나 현 시기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크게 열세인 북으로서는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서해 5도 해변에 다다르기도 어렵지만 상륙을 하더라도 점령할 수는 없다. 서해 5도에 주둔하고 있는 남측 병력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병력을 상륙시킬 수 없으며, 남측 해·공군의 지원 사격을 견뎌 낼 수없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직후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군 기획가들은 북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이북 일대를 일시 점령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늦어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북의 기습공격 성공 가능성은 부정되었다. 2002년 당시 스월츠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증언에서 북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후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오히려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북의 보복공격에 따른위험이 커 매력적인(?) 옵션으로 되지 못했다('북한무기체계평가」,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4). 그렇지만 서해 5도는 한미연합군의 대북 전략이 점차 공세적으로 바뀌면서 대북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변되었다. 남의 국방 관료들조차 공공연히 연평도를 북의 '목구멍의 비수'로, 백령도를 '옆구리의 비수'로 묘사하는 것도 이런사정 때문이다. 이에 서해 5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과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지상에서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는 육군 7기동군단은 공구 전력과 함께 북에게는 최대 위협 요소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서해 5도가 고립되게 되었다는 주장은 객관 사실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서 해 5도가 갖는 지형적 불리함과 고립은 서해 완충수역 설정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완충수역 설정으로 평시 우발충돌과 기습 공격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지형적 불리함과 고립성을 완화할 수 있 게 되었다.

서해 완충수역이 서해 5도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 유휴화시켰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서해 5도에 주둔하는 부대의 훈련은 실탄 사격 을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실탄 사격 훈련은 이 미 육지에 나와 실시하고 있어 전투력 약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육 지 훈련에 따른 횟수 제한이나 비용이 수반되나 완충수역 설정으로 우발충돌과 기습공격 가능성을 낮춘 데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 서 해 5도와 수역에 배치된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우발충돌로 인한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을 예방할 수도 있어 편익이 비 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NLL 수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 어 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선 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편익이 다. 진정으로 서북도서 방어와 주민과 장병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전 투력 약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작은 면적의 서해 5도에 무리하게. 특 히 천안함 사건 이후 많은 병력을 배치—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과 함께―하여 유사시 방어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피해 가능성을 키운 전략 · 전술적 무리함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NLL 무력화로 인민군이 인천 앞바다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LL은 무력화되지 않았다. 완충수역에서의 경계작전은 완충수역 설정 이전과 차이 없이 수행된다. NLL 이남 수역으로 북 선박이 내려올 경우—북 선박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려오더라도 남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만—'군사 합의서'에 따른 5단계의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내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각자의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그 결과는 지난 시기에 발생한 서해 해상의 무력충돌에서 보듯이 남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북 해군 전력이 연평도 서쪽으로 우회해 남하함으로써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을까? 서해 5도 수역은 북쪽과 가까워 수역이 좁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수역과 연평도-우도 수역에서는 NLL과 북의 해상경비계선이 거의 중첩된다. 상대적으로 수역이 넓은 연평도-소청도 사이는 해상경비계선이 NLL보다 남쪽에 그어져 있다. 그동안에도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연평도-우도 수역을 돌파하지 못했던 북의 해상 전력이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수역으로 우회해 남하함으로써 수도권을 위협한다는 것은 남의 해군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불가능하며, 더구나 이제 완충수역까지 설정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남 해군은 전력을 소극적·수세적으로 운용하고 북 해군은 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모든 지역과 수역에서, 특히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나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남북 모두 전력을 소극적·수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충수역 설정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이 상호 위협요소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을줄 수 있는 공세전략과 작전, 전술, 연습과 훈련, 이를 수행할 공세전력을 제한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하면 그만큼 우발적 충돌과 기습공격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아 왔다.

한편 평시 군사연습은 전시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수행되므로 평시 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할 개연성은 전시 전략과 작전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수립했을 경우에 훨씬 커진다. 남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전략이며, '작전계획 5015'도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현한 공세작전이다. 전략과 작전계획의 공세성은 공세적 무기체계의 도입과 운용으로 실행된다. 보유 무기체계가 방어용으로, 사거리도 짧고 화력도 약하다면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전략과 작전상의 공세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남의 해상 무기체계는 대형으로, 사거리가 길고, 화력도 세며, 항속거리가 길고, 속도도 빨라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에 북의 해상무기체계는 대부분 소형으로, 사거리가 짧고, 화력도 약하며, 항속거리가 짧고, 속도도 느려 북의 전략과 작전과 관계없이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더욱이 해상 완충수역 설정으로 북의 해군이전력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남의 해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완충수역 설정에 따라 남측 함정이 북측 함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북측 함정이 남측 함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1, 2 차 서해교전처럼 남북 경비함정 간 접근전이 벌어졌을 경우 북측 함 정이 선제공격하는 공세적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 다. 남측 경비함정들은 대청도 해전(2009)처럼 전술적으로 접근전을 피할 수 있으며 설령 접근전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피해는 북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남측 해군은 소극적·수세적 운용을, 북측 해군은 적극적·공세적 운용을 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은 대북 군사적 대결과 힘의 우위의 논리에 빠져 해상 완충수역 설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를 몰이해하는 것이자 여전히 대북 공세전략과 작전에 매달리는 한편 남북 간 해군력 격차를 도외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5)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지역 내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로 (장사 정포 등에 대한) 합동직격탄(JDAM)을 활용한 보복 정밀타격을 제약하고 공중훈련을 제한하며 북 특수부대의 기습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 주장은 북 전력의 70%가 평양-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정찰·감시가 무력화되면 북 장사정포에 대한 타격이 어려워지고 한강 하구 등을 이용한 북 경보병부대 등 특수부대의 기 습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은 남이 북보다 한층 우위에 있다. 또한 남 전력은 90%가 대전 이북에 배치되어 있어 북 전력보다 더 공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북 상륙부대인 해병 2사단의 서북 5도 및 한강하구 배치와, 유사시 평양 진격 전력인 육군 7기동군단의 전진 배치는 북에 대한 큰 위협으로 된다. 그런데도 남에 대한 정찰수단이라고는 성능이 낮은 무인기가 전부인 북으로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남의 상륙, 기습군대에 대한 정찰·감시에서 남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 장사정포의 남에 대한 위협 정도는 평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 큰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에 그칠 뿐 큰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한미 군 당국 간에도 평가가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논외로 하고 단순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남에 대한 북 장사정포의위협이 더 커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남의 대북 공중 정찰·감시는 저·중·고도에서 3중으로 이뤄진다. 도입 중인 글로벌 호크는 2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500km 이상을 탐지하며, 새매(RF-16)와 금강·백두 정찰기는 10km 정도의 중고도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100km(남포-함흥이남)를 탐지할 수 있다. 송골매 등 군단 보유 무인기는 1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북쪽을 정찰·감시하며, 주간에는 군사분계선 이북 20km까지, 야간에는 10km까지 탐지한다. '군사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대북 정찰·감시를 하게 되면 기종에 따라 최소 1km에서(송골매) 최대 31km까지(새매, 금강·백두 정찰기)—기존 비행금지구역 약 9km를 고려할 경우—

정찰·감시 지역이 줄어든다.

그러나 송골매는 주간 탐지거리가 20km에 달해 비행금지구역 이남 에서 정찰을 하더라도 휴전선 서부 일대의 정찰은 가능하다. 금강 정 찰기와 새매는 남포-함흥 이남까지 영상정보를 탐지할 수 있어 비행 금지구역 이남에서도 휴전선 이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 려움이 없다. 백두 정찰기도 백두산(500km) 이북까지 신호정보를 획득 할 수 있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 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 포 정보에 깜깜이가 된다는 주장(김민석)은 사실왜곡이다. 또한 설령 장 사정포의 기습 포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지상 대포병레이 더로 장사정포의 위치를 탐지해 내어 육·해·공 합동 대화력전 체계 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공격하더라도 북의 장 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남의 무기체계는 넘쳐 난다. 사거리 300km 이상의 지상·해상·공중 발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 서도 지상무기체계로는 80km의 다연장로켓포(천무). 사거리 130km의 전술지대지유도탄(ATACMS). 사거리 180km의 탄도미사일(현무) 등이 있으 며, 공중무기체계로는 사거리 115km의 공대지 미사일(AGM-142), 사거 리 120km의 정밀유도폭탄(GBU-39/53). 사거리 270km의 SLAM-ER 순 항미사일 등이 있고. 해상무기체계로는 사거리 200km의 함대지 유 도탄(해룡)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합동직격탄(JDAM)으로 장사 정포를 정밀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제부터 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이 장사정포 등으로 남을 선제공격 한다면 이

###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때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휴전 선 일대에서 남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북의 장사정포를 합동직격탄으로 폭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 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당시(2004) 윤광웅 국방 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에,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지역 내에서의 전술훈련 금지로 남 공군의 훈련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지엽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남 전투기의 출격 횟수(소티)는 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북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위협 요소 중 하나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남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줄인 다고 해서 공중 방어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 특히 대북 공세 훈련을 위한 출격 횟수는 줄일수록 바람직하다.

전방지역 공군 훈련공역,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 승진사격장에서의 실사격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김민석전 국방부 대변인)될 것이고 강원도 훈련 공역도 비행금지구역과 부분적으로 겹쳐 공군 훈련에 제약이 따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승진사격장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선회반경을 조정하여 얼마든지 폭격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 훈련 공역은, 춘천 동쪽 홍천 북쪽 상공의 MOA 30, 31로 추정되는데, 이 훈련 공역의 14km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폭격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미가 이 훈련 공역을 비행금지구역 남쪽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중 훈련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북의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대화력전이나 지상의전차 및 장갑차전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작전(CAS) 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JTBC, 10, 19).

한편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으로 한강 하구가 개방되고 김포 등에 배치된 해병 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면 이곳이 프랑스의 '아르 덴느' -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이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지역 -가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장(박휘락국민대교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 하구를 이용해 경보병사단 등 북의 특수부대가 기습을 감행할 경우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 이동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 정찰하더라도 사전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아르덴느' 기습공격은 기상 악화와 야음을 틈타 개전 초기에 부분적 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경계 과학화와 남 정찰기에 탑재 된 합성개구레이더(SAR)는 기상 악화나 어둠 속에서도 정찰이 가능하 다. 따라서 한강 하구 개방으로 이곳이 프랑스의 '아르덴느'로 될 것 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전 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적 선동이다.

이렇듯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구역에서의 전술훈련 및 정찰활동 금지가 초래할 공중, 지상 방어의 취약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한 전문가(윤우 항공대교수, 예비역공군소장)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 구역에서의 전술훈련 및 정찰활동 금지에 대해 북이 감수하게 될 제약도 함께 거론하며 비교적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우발충돌 가능성과 전술조치의 감소는 남북에게 모두 유리한 측면이며, 북은 무인기와 기구 활동 제한으로 정찰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대부분 시계비행에 의존하는 북 전투기의 대남 침투·공격 훈련과 수도권 위협비행 등의 전술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작전수행절차 변경으로 북 공군의 수도권에 대한 의도적 도발에 남의 군사적 조치가 지연되고 전술조치관과 임무조종사의 심리적 이완이 발생할 수 있다(윤우)?

'군사 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에서의 작전수행절차가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공중에서의 작전수행절차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

가 늘어났다. 작전수행절차는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작전수행절차는 남북이 상호 위협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전투기의 의도적인 대남 기습공격에 대한 남의 전술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근거가 없다. 북 전투기의 계획적인 대남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전술조치선(TAL, 군사분계선과 NLL 이북약 20~50km 지점)을 임의로 설정해운영해 오고 있다. 즉 북의 전투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비행하면남은 이를 대남 기습공격 의도가 있다고 간주해 전투기를 출동시켜저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술조치선은 그대로 시행된다. 따라서 북 전투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올 경우 남은 서산, 오산, 청주, 횡성, 강릉 등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출동시켜 북 전투기의 남하를 막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북쪽 비행금지구역이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구역과 거의 중첩된다는 점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북항공 전력의 기습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전과 비교해 커지지 않는다.

작전수행절차의 다단계화로 남북 어느 한쪽이 이를 악용해 계획적 인 기습공격을 감행하려고 할 때는 분명 다른 쪽 조종사들의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시계 등 대부분 수공업적 판단에 의 존해야 하는 북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첨단 센서 등의 지원을 받 고 작전반경과 사거리도 긴 남 전투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남측이 작전수행절차를 악용해 북의 전술조치를 지연시키며 대북 기습공격을 감행하려고 한다면 고 성능의 첨단 전력을 갖춘 남이 북보다 그 의도를 달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작전수행절차 변경으로 북 공군의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에 남의 군사적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남측 항공 전 력의 일방적인 우세와 대북 위협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측 항 공 전력의 남측 위협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균형감각을 상 실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감시초소 철수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 대화한다는 개념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부정으로 되고,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방위 전담 혹은 포기 중 택일하게 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를 비롯한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하게 평화지대화하는 것은 정전협정 1조 6항과 2조 13항 ㄱ목에 규정된 것으로이들 지역이 무장지대로 되어 운용되어 온 것은 휴전협정의 위반이다. 따라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휴전협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1976년 8월 이른바 미루나무 사건 이전에는 동 지역을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무장 (남)·북·미 병력이 공동 경비해 왔다. 최근에 다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화 하는 데서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 방어와 정전 관리 임무를 맡아 오다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 방어 임무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넘겨주고 정전관리 임무만 맡고 있다. 한미가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한국 방어 임무를 맡게 한 것은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가 통과(1975, 10)되어 유엔군사 령부가 해체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 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하게 비무장화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 른 것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의무이자 임무이기도 하다. 브룩스 전 유 에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이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유엔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조선 일보 9. 21)고 말한 것도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 장지대를 비무장지대로 관리해야 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무를 강조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임무는 정전협 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 대의 평화지대화가 유엔군사령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근 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종전선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다. 종 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국제법적 규정력을 갖지 못하며,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 되면 미국은 한국 방위를 전담 또는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은 거짓선동이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폐기되며, 정전 협정 폐기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임무가 소멸되고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된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연합사의 북으로부터 한국 방어 임무도 소멸된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연합사도 폐기되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에 관련조항이 명기되어야한다. 과연 평화협정에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용인하는 규정이 반영될지,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더라도 그 성격과 지위가 바뀔지, 성격과 지위가 현행처럼 유지된다면 한미연합체계가 한미연합사와 같은 통합형 지휘체계가 될지 아니면 미일연합지휘체계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될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도 폐기될지는 남·북·미,특히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협상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8)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의해 남의 국방개혁과 전력증강 등에서 사사건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은 '군사 합의서'의 1조 ①항 3단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조 ②항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붙임 4】에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범위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

회에서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4조 ③항에서는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5조 ③항에서는 "남북 군사 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 상태를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뤄 볼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기존 합의의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역할로부터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중단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군사적 신뢰구축 안을 제시, 논의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로 보인다. 또한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 합의서' 1조①항 4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될 군축 관련 논의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주된 임무가 될 것 같다. 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에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을 두어 관련 문서의 이행·평가와 개정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과 구축 문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직항로 개설과 북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 군사적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문 제들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평화수역 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직항로 개설 문제 등은 NLL 문제를 극 복하지 못하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는 남북군사공 동위원회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문제를 넘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좌우하는, 남북관계와 새로운 평화와 번영, 통일 의 새 시대의 도래를 좌우할 핵심 기구로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 준 다. 군사문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모든 문제가 응축되 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실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력을 제공한다. 남북 군사적 대결이 해소되면 북 체제보장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북이 핵을 폐기할,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동할 요인이 강화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바란다면 '군사 합의서'가 전면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증강이나 사실상 대북 해상 봉쇄와 차단을 기도하는 NLL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의 조치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5·24 조치 해제로 인천-해주 항로와 북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다시 보장하고 해주 직항로를 개설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개혁 2.0이나 전력증강 등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북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 속에서 기득권을 키워 온 세력들이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의 전력균형(군축)구현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증강과 국방예산 증액 등의 외길을 고집하며 대북 우위의 힘의 논리를 앞세워 대국민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 끝내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가 완료되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가 시작되는 등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지·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완충수역에서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역사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럽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유럽 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했던 것처럼 '군사 합의서'가 전면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충돌 방지와 이의 국지전,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막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계획적인 기습공격과 국지전, 전면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와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의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기지, 기갑군단, 특수부대 등과 남의 해병 2사단, 육군 7기동군단, 전술지대지미사일, 다연장포 등을 후방에 배치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군사 합의서'가 전면적으로 이행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 뢰구축조치로 발전하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의거한 재래식 군축 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남북 간 기습공격과 국지전, 전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만개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남 북이 상호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는 것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군사 합의서'가 순조롭게 시행되어 나갈지는 낙관을 불허하 고 있다. '군사 합의서' 채택 전후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고압적 간섭 과 국내 수구세력들의 반발을 보면서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언제 어 디서 좌초될지 걱정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유럽의 군사 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이 나토의 동진과 미국의 유럽 MD(미사일방 어) 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2007년 CFE(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 약의 활동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당시까지 비교적 순항했던 유럽에서 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이 파행을 겪고 미·러가 다시 군비 증강의 길로 접어들었듯이 한미 당국이 계속해서 한미일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을 추진하며 대북. 대중 군사적 압박 정책을 강화해 나 갈 때 '군사 합의서'는 후속 합의 도출은커녕 설자리를 잃고 그 이행 은 어느 순간 파탄나고 말 것이다. 군 당국이 한미일 MD 체계 완성 과 동맹 구축을 다그치기 위해 사드 영구 배치와 SM-3 요격미사일( 사드보다 더 높은 150km~50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미사일, 블록 2는 1500km에서 요격 가 능) 도입을 추진하고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을 재개하며 키리졸브 연습 과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저울질하는 등 '군사 합의서' 이행을 좌초시킬 수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이 당국자들만의 몫이 아니듯 '군사합의서'의 이행도 결코 국방 및 군 당국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아니그들 속에, 그리고 그곳 출신 인사들 속에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좌

초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들은 감시의 대상이다. 그들 중에는 언제라도 '군사 합의서' 이행이 파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강조하는 대북 군사적 적대와 군비증강,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속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올 수 없다. 오로지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국방예산의 삭감 속에서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온다.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을 좌우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군사 합의서'의 이행은 모든 국민들의 몫이다. 평화를 가져 오고 누리고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 합 의서'를 이행해 갈 수 있는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록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 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 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 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 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 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 기로 하였다
-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 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 로 하였다.
-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

- 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 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

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 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 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 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 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회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발행일
 2018년 11월
 18일
 발행서 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3-47) 2층

 전화
 02-711-7292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